

<의안번호 제2006-18호>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4. 1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4. 13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도록 함으로서 납세자 불편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부칙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된 무소픽업 및 코란도 밴 등에 대하여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과세하고, 그 후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근거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13조)
- 나.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임으로 삭제(안 제26조).

다.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조정(안 제28조).

- 현행 : 2분의 1은 7. 16 ~ 7. 31일, 2분의 1은 9. 16 ~ 9. 30일
- 개정 : 전액을 7. 16 ~ 7. 31일

라. 공매 미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규정 신설(안 제37조제3항)

마. 담배소비세 세율변경 및 저가 담배소비세 규정 삭제(안 제56조)

- 흡연용 권련 1갑당 담배소비세 510원→ 641원,
- 판매가 200원 이하인 담배소비세→ 삭제

바. 무소픽업, 코란도 밴 등 승용차 전환차량(부 칙)

- '09. 12. 31까지→화물차로 과세, '10년→ 33%, '11년→ 66%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조(대통령령 제19270호, 2006. 1. 12)

○ 입법예고(2006. 2. 28 ~ 3. 19) 결과 : 의견없음

※ 표준안 시달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탐 786(2006. 2. 7) 및 도세장과 1393(2006. 2. 8)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도록 함으로서 납세자 불편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부칙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된 무소픽업 및 코란도 밴 등에 대하여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과세하고, 그 후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 안 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는 1매당 50만원 이하인 균세의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이며,
- 안 제23조(수정신고 및 납부)는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사항이고
- 안 제26조(과세표준)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한 사항이며
- 안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은 그 동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의 과다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을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려는 사항과
- 안 제37조와 안 제39조는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문 정비와 영업용 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수시부과 할 수 있도록 추가신설 하려는 것으로 검토됨.

○ 이밖에도 담배소비세의 세율조정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납기 변경 및 부칙의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된 조문 등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화 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었음.

<의안번호 제2006-19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4. 1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4. 13

2.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 2m³미만인 화물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 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되도록 하고,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화물적재면적 2m³미만(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자동차를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1)

- 다. 임대주택 감면 및 추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 라. 터미널용 토지 50%감면 조항을 삭제 (안 제15조 및 제21조)
- 마.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히 함(안 제16조)
 - 토지 및 지상건축물 → 토지 · 지상건축물 · 주택
- 바.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중 외국인투자지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추가(안 제23조).
- 사. 법안이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대상재산의 취득기한(5 12 31)을 삭제(안 제25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2006. 2. 28 ~ 3. 19)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및 「임대주택법」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 안 제2조 및 제3조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m² 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면제대상 승용자동차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 안 제5조의 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서 의료원을 설립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89호)에 의하여 설립토록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법률에 의거 설립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근거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신설한 사항이고
- 안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는 그 동안 관련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로 최초분양과 건축주라는 의미를 달리 해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건축주의 개념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임대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하도록 감면조례를 임대주택 감면 및 추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한 사항이며
- 안 제15조 및 제21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27호에서 이미 터미널용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해 삭제된 것으로 검토됨.

※ 종전 별도합산(2/1,000~4/1,000) → 분리과세(2/1,000)로 전환

- 이밖에도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 감면대상 중 외국인 투자지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추가,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대상재산의 취득기한을 삭제와 관련된 조문 등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개정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화 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의안번호 제2006-20호>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4. 1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4. 13

2. 제정이유

-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을 시정하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 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장(경리관)1인을 포함한 9인 이내
- 나. 계약심의위원회 임기(안 제3조)
 -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2년, 연임가능

다.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안 제4조)

- 입찰참가지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한

라.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

-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 위원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

마.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안 제8조, 제10조)

-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 군수는 그 사항을 반영

바.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정함(안 제12조)

- 주민참여대상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상한금액 : 일반(전문)공사(전기·소방포함) 추정가격 400억원 이하

사.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6조, 제3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6조 내지 제109조
- 예산조치 : 추경확보 예정
- 입법예고(2006. 2. 16 ~ 3. 6) 결과 : 의견제출 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시정하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우선 동 조례안의 핵심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에 대한 제정 근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의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또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인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의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공사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며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법리적인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별표 1의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400억원으로 폭넓게 확대한 부분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와 정신을 따른 것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의 의지로 비추어 질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행위로 판단되며, 또한 별표 2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을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향후 수당의 변동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점을 사전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타 관련조문 등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으로 별도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나 동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행정기관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세칙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관계법령 발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3항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지급기준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제1항에 의한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2006-21호>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4. 1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4. 13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 2005. 8. 4공포)으로 분법 공포되어 2006. 1. 1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제외사항의 대장가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5조).
 - 당초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로 상향
- 나.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안 제17조)
- 다.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전산자료로 같음(안 제21조).
- 라.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행정·보존재산으로 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시행(안 제22조).

- 마. 건물대부료 신출에서 공유건물 대부의 공용면적비율을 일률적으로 30% 적용(안 제31조).
- 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 전년도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0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경작용 50%, 주거용 45%, 기타 40% 경감 적용
- 사.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대부재산정리부를 전산자료로 같음 할 수 있음(안 제36조).
- 아. 수의 매각 범위 축소(안 제40조).
 - 농업진흥구역내 5년이상 대부 경작자 및 폐천부지 점 사용자에 대한 수의 매각 조항 삭제
- 자. 군, 사업소 읍·면 등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 적용(안 제47조).
- 차.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기능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안 제63조).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행정자치부 표준안 【도 회계과-1907(2006. 1. 27)호】
- 예산조치 : 필요없음
- 입법예고(2006. 3. 6 ~ 3. 31)결과 : 의견제출 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 '05. 8. 4)으로 분법공포되어 2006. 1. 1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격을 당초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토록 규정한 것은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 안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에서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산관리 재원 확보 및 재산관리 목적외 사용을 방지토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 하며
- 안 제17조(무상사용기간)에서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를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사용허가 기산일의 기준을 실제 사용일로 대체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 안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안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안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등 기타 관련 조문의 규정들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되며,

○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 개정한 것으로 별도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의안번호 제2006-22호>

거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4. 1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4. 13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 2005. 8. 4공포)으로 분법 공포되어 2006. 1. 1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실·과·단에 물품운용관 지정(안 제2조).
-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사업소장, 직속기관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에게 부여(안 제4조).
- 기증품 취득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 물품의 기증 또는 증여시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취득
- 장부의 작성시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 같음(안 제25조).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행정자치부 표준안 【도 회계과-1907(2006. 1. 27)호】
- 예산조치 : 필요없음
- 입법예고(2006. 3. 6 ~ 3. 31)결과 : 의견제출 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 '05. 8. 4)으로 분법공포되어 2006. 1. 1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주요변경 사항으로서 안 제2조(관리책임)은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정하기 위한 조항이며
 - 안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 제4조(사무의 위임),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는 회계관직에 대한 직무를 정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며, 중요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한 조항이고.
 - 안 제11조(기증품의 취득)는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는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 기타 관련조문 등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으로 별도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의안번호 제2006-25호>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2차)]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4. 1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4. 13

2. 제안이유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하지만 노인전문병원의 부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 요양병원의 시설을 확충하여 미래 수요에 대비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취득재산의 표시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지목및 물 건	면적 (㎡)	예정가격 (천원)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계			1,675,448			
건물	거창읍 송정리 719-4	건물	1,065	1,675,202	증축	거창군	
토지	거창읍 송정리 산42-18	임야	996	246	"	"	기부채납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9조, 제41조 및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9조

5. 검토의견

-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719-4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거창군의 공유재산인 거창군립요양병원의 증축사업을 위하여 관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증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하지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부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자 현재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719-4번지 거창군 군립요양병원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건립부지 996㎡(기존 3,297㎡), 건축연면적 1,065㎡(기존 1,283㎡)로 하여 병상수 80병상(기존 50→130)으로 증축하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675,202천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총 소요사업비 1,675,202천원중 1,445,820천원(국비 722,910, 도비 361,455, 군비 361,455)은 본관 증축사업비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담장, 조정, 진입로 정비 등의 부대사업비 229,382천원이 부족하여 '06년 1회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본 사업이 완성되면 그동안 거창군 요양병원의 규모가 현재 50병상 규모밖에 되지 않아 군 관내 및 인근지역 등 환자 수요충족에 다소 역부족한 면과 요양병원 손익분기점인 100병상 규모에 못 미쳐 독립채산제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만성적자를 탈피하여 흑자운영 전환도 가능하리라 보며, 병상증축 운영시 노인복지 의료서비스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봄.
-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7조·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거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투자사업(군 자체심사 : 10억이상~30억 미만)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증축관련 국고보조금이 2005년 10월 17일 통보(가내시) 되었으나,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례들은 향후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증축사업에 따른 당초예산의 확보와 대행사업 수탁협약서 체결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채납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3. 기부의 목적
4. 가격
5. 도면

②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재산의 사용기간 중 당해 기부재산을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

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익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

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중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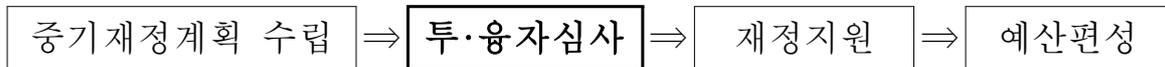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

1. 概 念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난 '92년 도입된 제도로서
-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2. 목 적

-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운영
-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
- 지방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된 계획재정운영

3.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
 - 지자체장은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지방재정법 제37조
 - 지자체장은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관한 심사를 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1항
 - 지자체장은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중앙심사위원회(15인이내), 지방심사위원회(15인이내) 설치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 시군 10억이상~30억미만, 도 20억이상~200억미만, 중앙심사 200억이상 등
 -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운영해야 함